

고려법학 게재 논문의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내규

2011. 6. 1. 제정

2020. 9. 1. 개정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고려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고려법학 게재논문이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적절한 제재를 내리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제2조 (기본원칙) 고려법학 편집위원회(이하 편집위원회)는 고려법학 게재논문의 연구윤리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와 결정의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
제3조 (예비절차) ① 고려법학 게재 논문이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편집위원회에 그 게재논문의 게재취소 등의 제재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게재 논문의 필자에게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이의제기자에게 제2항의 소명에 대하여 다시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논문의 필자에게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서면으로 한다.

제4조 (예비절차의 종결) ① 편집위원회는 제3조의 절차를 통하여 게재 논문이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5조의 심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의제기를 기각하고, 게재논문 취소 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.

제5조 (본안심리와 결정) ①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, 게재논문의 연구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위원에게 게재논문의 연구윤리지침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. 이 자료에는 제3조의 이의제기 및 소명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 논문이 연구윤리지침을 중대하게

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게재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. 그 외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나 투고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 논문이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기각하고, 게재논문 취소 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은 이의제기자와 게재논문의 필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6조 (판결에 따른 조치 등)

① 편집위원회는 제4조 제2항,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 이후에 이와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의제기자와 게재논문의 필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9.1.>

이 내규는 2020년 2월 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.